## S1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04)

|  | 식 품 |  | 의 약 품 |
| :---: | :---: | :---: | :---: |
| - |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법 | 약사법 |
| 제형 | 일상식품 형태 | 정제, 캅셀, 분맏, 과 립, 액상. 환 등 | 정제, 캅섿, 분맏, 과 립, 액상. 환 등 |
| 안전성 | 위해성 베제 | 위해성 배제 | 위해/이득 균형 |
| 기능성 | 표시 돗함 | 기능성표시 가능 | 유효성표시 가능 |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기능성 관련)

## $\square$ 일반식품 (식품 위생법)

$\checkmark$ 석품여생법서형규척 재6조 (히유표시•과대광고의 범위) (1)항 : 질병의 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흔동할 우러가 있는 내용
$\square$ 기능성 식품 (2004년 1월 이전; 식품위생법)
$\checkmark$ 석품유셩법시형규축 쟁 6 조 (2)항 :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저 아니하는 표 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식품은 [별표3]과 같다.

$\checkmark$ 광고사전심의기구에 의한 솨전심의필
$\checkmark$ 심의기구 :

- 건강보조식품 (한국 건강보조•륵수영양식품협회)
- 득수영양식품 (한국식품공업협회)
$\checkmark$ 광고사전심의위원회 : 학계•소비자단처, 공무원, 업계 등 10 인 이내 로 구성, 보건녹지부 장관 임명
$\square$ 건강기능식품 (2004년 1월 이후 : 건강기능식품법)
$\checkmark$ 제 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checkmark$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필


## 제품개발 $\Rightarrow \Rightarrow$ 소비자



## 식품인가 VS 약품인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 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 캅셀 - 분말 - 과립 - 액상 -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으로서 식약청장이 정한 것을 말함
$\qquad$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체계

- 888 양소기능 강조표서
> 기준 규격형
- 영먕기능식품 (일본)
- 보전기능식품 (중국)
- Dietary supplements (미국)
- 고벽스
- 여옷 기느표 (한국)
- 득정보건용식품 (일본)
- 기능성 강조 표시
$>$ 입투 기줃, 규격형
$>$ 개별 인정혐
- 질병 강조표시
> 일쿠 기준, 규격형
$>$ 개발 인중형
- NHP (캐나다)
- Dietary supplemens (미국)
- 고뎩스 $\rightarrow$ 고도기능강조표시
- 기티 기능 吾시 (힌국)
- 미국, 중국, 밀본예서는 블혀
- 고덱스 $\rightarrow$ 질병ㅇㅟㅟ험갑소표시
- NHP $\rightarrow$ 절병예방 및 치료의 표시 허용
- 절병힐생 규혐 감소 표시 (한국)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심의에 관한 관련 법규체계(2004.1.31)

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checkmark$ 제 16 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checkmark$ 제 17조 (표시기준)
$\checkmark$ 제 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II. 식약청고시
$\checkmark$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checkmark$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checkmark$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III.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십의위원회 자체 세부운영 규 정
[별표1]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기준 별 세부지침
[별표2] 심의세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6조 (기능성 표시 - 광고의 심의)

(1) 저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이 정한 저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률 반아야 한다.
(2) 식약청장은 표시•광고심의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17조 (표시기준)

## 의 무표시 사항(용기 - 포장)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2) 기능성문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3) 섭춰량 및 섭춰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4) 유롱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워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약청장 정하는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춰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재료명 및 함량
10. 절병의 예방 및 치료들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 -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1) 질병의 에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흔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흔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a)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5)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든 내용

##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

1. 질병의 에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 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1)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2)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3) 질병의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4) 제품명, 학슐자료, 사진 등을 할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내용 (다만, 줄병의 발생 유험을 감소시키는다 도움의 본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허당도지 이나한다)
(5)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6) 의약품을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
(7)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클 증가시킨다는 내용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1)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큰 내용
(2) 식약청장이 인정하주 아나 한 기능성
(3) 수상 - 인증 - 선졍 - 륵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4) "쳑고" - "가장 좋은" " "특" "Best" " "모스트" • "스耳결" 등의 표현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 감사장 또는 체험기 이용, "주문쇄도", "단처추천" 등의 표현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져품 의 기능성율 보증,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저도 또는 사 용하고 있다는 내용
(3) 외국져품 또는 외국과 기술져 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지 나친 외국어 사용)
(4) 다른 업소의 져품을 간접젹으로 다르게 인석되게 하는 광고
(5)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젹정하지 아 니한 니용

## 〈식약청 고시 제 2004-5호〉 <br> II.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2조 (심의사항) $\quad \checkmark$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 3 조 (심의기준)

1. 건강기능식품 정책 (국민건강증진 , 소비자 보호)에 부합
2. 인쳐의 구조 및 기능, 생리적 작용. 보건 옹도예 유용한 효과
3.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자료
4. 을바른 문장. 푱어, 명확한 표현 사용
5.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으로 고시오었거나 연정된 내용예 부합
6. 표시기준 (제17조)에 적합
7. 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 (지18조)의 해당 여부

제 8조 (심의결과표시)
(1) 광고에 심의받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2) 그 방볍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고매처의 톡성율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장이 식약청 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10 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 당연직 3 인을 포탐한 15 인 이내의 위원
(3) 당연직 : 보복부의 약무식품정책과장, 식약청 기능식품과장, 기능식품 규격과 장
(4) 위원 :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 장이 위촉

1. 건강기능서ㄱㅜㅜㅁ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2.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처, 서민단쳐, 건강기능식품 관련학회, 매학의 장이 추춴한 자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월

## 제 16조 (세부규정)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서부사항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
다.

## [별표1]기능성표시 - 광고심의 기준별 세부지침

(1)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 호)에 부합
$\checkmark$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절항성을 위한 정책예 부 합
$\checkmark$ 영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유통 - 판매를 도모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 식생활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함
(2) 보건용도여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

현
$\checkmark$ 인체조직 기능의 증진을 나타내는 표현 거가ㅇㅠㅠㅈㅣ, 러장증진, 재절개선, 영야ㅇㅗㅗㅋㅡ 등
$\checkmark$ 인체의 성장 - 발육 및 정상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 용에 대한 표현

예) 비타민 $D$ 는 뻥ㅇㅇ 형성과 장관에서 칼숨의 홉수를 도우뗘, 갈숨의 대사를 촉진ㅅ/켜 칼슴이 재의로 배설되지 않도독 갈 슴의 재홉수를 돕는다.

예) 석폼영앙하적으로 공이뇐 사설의 표헌 임신기, 수유기, 성장기 맞 노화기의 영양보급 등
$\checkmark$ 정상기능의 향상 또는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예 EPA 하유ㅈㅔㅔ품은 를래스테롤 개선애 도움이 되고, 혈형을 인할 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quad$
$\checkmark$ 일상 식품의 섭취는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
(절병발생워혐감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인정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사안별 로 인정할 예정임)

 는 소미자즐유한 카숭보훙용재품잉니다.
(3)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
$\checkmark$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된 사실
$\checkmark$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 과학적인 근거지표
 우머 국재심포지움을 통혀서 노화방지, 가세포 분활애 됴과가 었그 각종 성 이영앵ㅎㄱ선올 가져온 선올즐로 맙증고었습니다.
$\checkmark$ 근거 없이 자사졔품이 타사져품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젹, 직몌적 표현 또는 부직절 한 니교 표현 불가
$\checkmark$ 다른 식품과 성분•함량 등욜 비교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해당 성훈 함량 등에 관한 시험 겸사자료예 근거
(4) 올바른 문장,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
$\checkmark$ 허춘어 - 석품과학용어 - 한글맞춤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는 외래어표 기법예 따라서 표현
$\checkmark$ 비속어, 은어 및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 표현불가
$\checkmark$ 같은 원료의 명칭이 식품 - 의약품의 명청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품의 명칭을 표현

$\checkmark$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쉅게 표현하여 합리적인 졔품선택여 도움이 되어야 함.


 ㄴㅇㄱ굼인나다.

## 심의세칙(자체 세부운영규정)

1. 주원료 또는 성분 위주로 기능성을 표현
2. 보조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 - 광고할 경우에는 함량 표시 및 간단 한 서슬에 국한

- 표현 허용 에 :

00 지품은 양절의 단백절과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저있으마, 노조연료로 키토산과 도코파롤이 첨가

- 표런 불허용 에:

양절의 단백절로 이쿠어진 00 재품애는 보조연료로 면역럭증가, 항균작 용을 하는 키토산과 노화억지죽용을 하는 토조때퓰이 점가 고였으머, 조 헝기능응 가진 비타민, 저항격읕 증즘하는 아연과 각종 미녜랄, 란습 등 이 골고쿠 들어 았습니다.
3.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에 해당되는 표현 불가
(1)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앤날부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더 주줄 한 가유를 허약치
 사용
(2) 신문, 잡지 등의 기사,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 등을 인용 또는 기 재함으로써 암서
 않으매, 애방효과가 뮥어난 것으로 방혀졌다.J 등
(3)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등욜 제절교선, 처내정화라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형하어 섭철풀 견장*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현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이 요구됨. (의약품의 용법 - 용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성 ( $X$ )
5.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광고 하 여서는 아니됨
 공급
6. 제품의 기능성을 사실과 다르개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현 불가 예시 키토산은 인채예 가중 홍수되기 서운 고분지 형태로 만들어저 인제 의 지연지유력을 히녹시켜 주는 고기능성 건강식풀입니디.
7.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정대상에게 효능 -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 물가

8. 판매사례품, 경품류, 제공기간, 반품, 교환, 대금지물방법 등의 판매방법 및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물가

9. 저속한 문구, 사진 및 도안 등, 광고 윤러성을 저해하는 내용의 표현 블가 예시) 강럭하고 정력적인 남자의 함은 고든 남자들의 폄, 그 꿈을 00 제품으로 이구섭씨오.
10. 음주, 흡연 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현 불가 예새) 음주, 훕연 등으로 밈은 건강과 휼력율 ㅚㅚ찾는대 도움을 줍니다.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현재 32품목)

1. 영양보충용제뭄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지방산, 아미노산, 단백질)
2. 뱀장어유제품
3. EPADDA 함유제품
4. 로얄젤리제품
5. 효모제품
6. 화분제풀
7. 스쿠알렌제품
8. 효소제품
9. 유산균함유제품
10. 흘로렐라제품
11. 스피루리나제품
12.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13. 배아유제품
14. 배아제품
15. 례시틴제품
16. 옥타코사놀함유제품
17. 옥타고사놀함유제품
18. 알콕시글리세룔함유제품
19. 포도씨유제품
20. 식물추출물발효제품
21. 고다당단백제품
22. 엽록소함유제품
23. 버섯제품
24. 앋로에제품
25. 매실추출물제품
26. 자라제품
27. 베타카로틴함유제뭄
28. 키토산제품뮤
29. 키토올리고당함유제
30. 글루코사민함유제뚬
31. 프로폴리스추출물제뭄
32. 인삼제품
33. 홍삼제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품목군
기능성 내용
표현 불허용 사례

- 근핵, 결힝조직 등 신치조적의

1. ㅇㅕㅕ얌보춤용

죠품

1) 단볙질보총용 지품

- 거감즘조 및 뮤지
- 단백질 대쇼균형예 도훔
- 영얌보를, 영얌부족 개선

2) 비타민 $A$ 보충용제풀

- 동뮬성식쿰예 함뮤되어 있으며 녹황색의 식춤성식뿜애늘 체내에 서비탄ㄴ A의 전구져인 카로티 노이드의 헌때로 들이었옴.
- 누의 간상쇼포에서 톨치즐 고N 수 였게 히주는 색소ㅅㅗㅗ돕신)릎 항성 하는데 비타민 A가 필요.
- 눈의 영양공른
- 질볌 저함멱 증진
- 철맥순환 촉진, 혈행개선
- 헐맥상승 억제
- 인치의 면역력 증진
- 피부탄력유지, 피투노화 - 잔주즐 방지
- 스티미너 작용
- 지아 거강예 도움
- 결핍증 : 아명증, 각막건조증, 실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품목군 기흥성 내용
3) 비타민 $B_{1}$ 보충용 저품

- 귝류 (당질) 섭후랑이 많율수록 비타민 $\mathrm{B}_{1}$ 워 펼 $\Omega$ 랑이 증가
- 에너지 대사에 간여
(당질의 적줄한 대사를 촉진시켜 음식으로부터 에너지 률 만들도혹 도움)
- 수옹섬 비타민의 히나로 함산돠

7 비타닌 C 보충용 제품

작용를 하며 귤형잔힌 식사츨 롱헤
적절한 ㅂIF타인 C즐 선최히도독 견장하교 있음

- 함산화작용: 세포흔상율 뮤발시키기 도하는 자유기유혜산소)로부터 인치롳 보호함.

표현 불허용 사례

- 졀핍종 : 각기병 말조 신겸염, 부ㅈㅗㅗㅁ, 신경이상증세
- 십잠과 신경조직율 정삼화시킴
- 피로, 다리의 무감각 허약
, 절핍등 : 겨철병, 저항성 저하 지주염, 출혈
- 상저지유의 지연
- 잇옹이 분고 성게 훌혈이 일어남
- 치아가 악헤짐, 근육쇠약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 품목군

기능성 내용

[^0]- 벼의 형성메 도뭄
- 장견에 서 칼셤의 흠수룰 도움
- 칼슝의 디사를 축진시겨 칼륨이 졔여로 배설되지 앉도큭 캅늄의 재흘수를 도뭄

9) 비티민 $E$ 보총용 제품

- 항산화 작용 (시포막의 구조성분이 률포회 지방산이 파과되는 것율 막아 서포어 촌상믈 예밤힘)
- 지방성 식뚣에 비타민 E 정가 시 지밤신들의 선화변질율막음

8) 비타민 $D$ 보축욤 제품

- 겯핀증 : 구두벽(어리시이)

골다공종(성인) 뮤발

- 빼의 석회화가 부설혀짐
- 골졀이 잡욈
- 다리, 켝추. 가슴의 기형
- 졀핍증 : 적헐구 용훵, 빈헐, 뇌훌헐
- 노화방지


## 표현 불허용 사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품목군 기능성 내용 표현 불허용 사례

2 인삼 - 원기혀녹ㄱ
보총푱 제품 맨역력증진
조종ㅇㅁ앙장에 도뭄

[^1]5. $\operatorname{EPA}$ 또는

- EPA 함유제품 :
- 콜례스쳬플 개선매 도움
- 동벅경화 억며

DHA 함유저품 - 혈헴율 원한히 히는a 도움

- 치매매방, 사고력 - 기억격 증감
- DHA 함유제품 :
- 뇌기능 활성물줄
* 두뇌 망막의 구성섬분
- 두뇌 영양공근에도 도물
- 두뇌 - 시선겸 받달
- 학습기능 항삼 수혐생 건뇌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품목군


## 표현 불허용 사례

9. 서쿠익례

피북멩ㅁ

- 신진대소 기능
- 제내예 서 물과 반응하여 사소와 메너지 발생
- 혈액매 산노 공른, 산소부족 히결
- 피부 및 소포여 제쌩, 손상방ㅈ
- 나의 유햐불질 억지
- 헐관과 피를 만계 히줌
- 자연치뮤력 깅화

11. 유산렬

함뮤 져품

- 유익한 유산큰의 증식
- 변비야방
- 정니 뮤허 미샐문 억저
- 소화 증수데시 ․․진잔용
- 쟁내 연동문동
-정장작용
- 멸중 률먜스미플 조철작용
- 소화닽럄 허소, 위장치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 광고 표현 적용사례 |  |  |
| :---: | :---: | :---: |
| 품목군 | 기능성 내용 | 표현 불허용 사례 |
| 23. 연롬소 | - SOD 함뮤 | - 신ㅊ1 면역개포 뀸성화 |
|  | - 듀히산소의 메밤 | - 노화밤지 피부미용 |
|  | - 피부건강애 도움 | - 항륙작용 |
|  | - 거강중진 및 뮤지 | - 를해스톄률 촉적애방 |
| $\begin{aligned} & \text { 25. 알로메 } \\ & \text { ㅈㅓㅜㅜㄹ } \end{aligned}$ | - 잠은동에 도움 | - 상저수윽 및 화응 미부질한개선 피부미용 |
|  | - 먼여ㄱㅕㅕㄱ 증강강 | - 신장기느의 보호 및 개선 |
|  | - 귀와 장러감에 도움 | - ㅐㅐ포부활 및 께생작횽 |
|  | - 피부러강에 도움 (알로애베리) | - 변비개선 |
|  | - 배변홀동매 도울 (아보레센스) | - 소화 - 응수츅전작욤 |


＜에시 ：$>$

|  |  |  |
| :---: | :---: | :---: |
|  |  |  |
| （2）12t） |  |  |
|  | 䢒 |  |
|  | $150 \times 6$ |  |
|  | 23 g | 7\％ |
| ctify | 29 | 3\％ |
| GX193 | 8 g | \＃1\％ |
| 34管原 | 55\％ | 2\％ |
| fivelel c | 11 m | 20\％ |
| 或畐含 | 20－5 | $7 \%$ |
| 옹기눈영춘 조는 <br>  <br> 0 mm |  |  |
|  | 7893去 | ［乐的 \＃t |

＜예시 $3>$

| （1）영양－기능정보 <br> （3）1望 튼링 |  | $1{ }^{1}$ |  | cumet | 18 | exxy |
| :---: | :---: | :---: | :---: | :---: | :---: | :---: |
|  | （1）렬 | 150 cca |  |  | 29 | 3\％ |
|  |  | 230 | 7\％ | （0자팡 | 69 | 11＊ |
|  | 노이석유 | 39 | 12\％ | （1）4프를 | 55. | 2x |
|  | （1）비타민 C | 114 | 20\％ | （010들 | 204 | 78 |
|  | （10）가오ㅇㅓㅓㄴㅍㅛ 논 지표넹 | $0 \pi$ |  |  |  |  |
|  |  | 1\％สขง | （x）प｜ |  |  |  |

$<$ 여시 $4>$



ㅃ（ ）인여 수치는 1영 영영소기준치이 대힌 비묠임
$\qquad$

영양소 기준치

| 영얌소 | 기준치 | 여ㅇㅘㅑㅊㅗ | ㄱ1주ํ | cetatis | 기żx |
| :---: | :---: | :---: | :---: | :---: | :---: |
|  | 328 | 校姑（ay） | 15 | 퐈토엔산（mg） | 5 |
| 닉이셥유（g） | 25 | 비타민D（ 48 ） | 5 | 21（m） | 700 |
|  | 60 | 비타민（Na－TE） | 10 | Rㅛㅇㅡㅡ（ $\mu \mathrm{g}$ ） | 75 |
| 치낭（g） | 50 |  | 55 | 마그멯（\％） | 220 |
| 포화지방（g） | 15 | 비타민 $\mathrm{B}_{1}(\mathrm{mg})$ | 1.0 | 아현（mg） | 12 |
|  | 300 | 비타언 $\mathrm{B}_{2}$（mg） | 1.2 |  | 50 |
| 4匽巷（m） | 3,500 | 4이아신（ns NE） | 13 | 7 7elma） | 1.5 |
|  | 3，500 |  | 1.5 | 망자（ $\mathrm{ma}_{6}$ ） | 2.0 |
| 비타딘（tut FE］ | 760 | 영사（（ $\mu \mathrm{g}$ ） | 250 | 그쿤（18） | 50 |
| 비타벤C（m） | 55 | 니타멘 $\mathrm{B}_{12}(\mu 8)$ | 1.0 | 퓬리느독（109） | 25 |
| 智食（78） | 700 | 비오 변（48） | 30 |  |  |

## 기능성표시 • 광고심의현황

（2004．9． 30 현재）

| 심의매체 | 건 수 | 적 합 | 수정 적합 | 부적합 | 비고 |
| :---: | :---: | :---: | :---: | :---: | :---: |
| 인쇄매체 | 1,293 | 191 | 1,005 | 97 |  |
| 방송매체 | 247 | 11 | 195 | 41 |  |
| 기능성 표시 | 124 | 78 | 45 | 1 |  |
| 기 타 | 3 | - | 2 | 1 |  |
| 총 겨 | 1,667 | 280 | 1,247 | 140 |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심의의 <br> 현안 문제 및 자체 규정

## 히

- 최종제품에 대한 특허명칭의 표현은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기능성 내용일 경우만 표현가능
- 부원료에 대한 록허 관련 내용은 표현 붇가
-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이외의 의약품적인 효능에 대한 특허내용은 표현불가
- 셕품학자가 제품의 재법 관련 특허를 득했다는 내용은 표현가능


## 논문인용 동의 표현

- 학술진 횽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l 급 논문예 대해 심의워원회에서 심의 후 판단하여 결정함. 다만, 연구보고서나 세미나 발표자료는 연정치 아니함(부 원료에 대한 내용은 표현올가).

공공기관요서 지품을 연구규발한 사실 (연지품, 또는 주원료예 한함)의 표현

- 기관장 또는 조직의 부속기관장 명의의 "기관명칭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제줄하도독 함.


## 현안 문제 및 자체 규정 (계속)

* 배합된 원재료들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경우 주원료와 부 원료가 명확히 구분딜 수 있도톡 표현
* 인체구조의 건강한 상태의 사진 및 도안의 인용은 표현 가능
* 영양소 결핍 증상 관련 내용은 표현 불가
* 제조회사가 제약회사인 경우, 제약회사들 소개하는 내용은 표현 불가

ㅎ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혼용한 광고물으 표현불가
아 질병 또는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의사가 설명하는 것은 표현 불가

*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특정영양소에 대해 일반식품과 비교하는 것은 표현 불가

의: 본제푿에 하유된 비타민 의 라은 사기 50 개를먹는것과 간승 $4 C$








## 




7
 * x











$\qquad$

GOLDEN TREEM 35 대훅렛ㅅ틸 졔품
콜레스태룰 개선에 도운
훈형을 연촵히 혀는데 도운
향산형 작홍


두뇌 영양공를



 ㄹ․


$\qquad$

Lllastration 3.6



 Matis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기관

| 위원회명 | 주관기근 | 랑고메체 | 심의쳥테 | 관런법가 |
| :---: | :---: | :---: | :---: | :---: |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위윈회 | 건강기능 식품협회 | - 인쇄물 <br> - 방송 <br> - 인터넷 <br> - 기타 | 사전심의 | 건강기능 식품법 |
| 한국간행물 윤리 섬의위원회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 원호 | - 간행물 | 사후심의 | 표시-광고의 공징화에 관한 법률/기타 관 련 법규 |
| 상품판매 방송 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 홈쇼평방송 | 사후심의 | 방송심의 규정집 |
| 한국광고자율 섬의기구 | 한국광고단 <br> 처연합회 | - 방송 <br> - 인셰물 | 사전심의 |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기타 관 련 법규 |




[^0]:    - 영얌보급

    15) 구리 보충욤지품

    - 결핀층 : 척혈구 항성이 저하되이 변혈발생
    - 심징군한계 결합조직을 정상으로 유지 영앙모는

[^1]:    - 군환기징메 개선
    (헐전셈성억지 혈안 - 혈류조절)

